국회에서 의결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인

2017년 10월 31일

국무총리 이 낙 연

국 무 위 원 법무부장관

박 상 기

◉법률 제14967호
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

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0조의4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제49조의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법무사 징계위원회의 민간인 위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,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이들을 공 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 어 이들의 업무수행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「형법」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